

「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

설치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.
-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.
-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,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충전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운영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하고자 함.

※ 업무협약 주요사항

기 관 명	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구미시	부지 제공(공유재산 유상허가)
민간운영사업자	충전기 구축비용 100% 부담 및 운영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2항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*을 축조할 경우에 해당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* 영구시설물 :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(주차장, 수소충전소 등)

※ 근거 :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마목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(1) 사 업 명: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사업
- (2) 기 간: 2024. 8. ~ 12.
- (3) 설치대상지: 구평동 433번지 등 6개소
- (4) 주요시설: 급속 충전기 15기, 완속 충전기 21기

나. 운영방법

- (1) 운영주체: 민간운영사업자 등

※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 사업자 협약을 통하여 선정

- (2) 운영기간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(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)
- (3) 운영범위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- (4) 운영방안: 개방적 운영

※ 근거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1항

다. 전기충전기 설치계획

1) 설치장소 및 수량 : 설치시설 6개소 / 충전기 36대(급속 15, 완속 21)*

구 분	계	급속	완속	비고
대상시설(개소)	6	6		
충 전 기(대)	36	15	21	

* 설치대상지 현지실사 완료 후 수량 및 충전기종(급속 or 완속) 확정

2) 설치대상지

연번	구 분	총 주차 면수	수 량		담당부서	주 소	비고
			급 속	완 속			
총 계	6개소	691	15	21	교통정책과		
1	구평동 433 공영주차장	58	2	1		구평동 433	신설
2	산업단지공원 지하주차장	233	3	9		산동읍 신당리 2017	신설
3	구평동 공영주차장	173	2	7		구평동 448-1,449-1	신설
4	옥계동 공영주차장	60	2	1		옥계동 640-3	신설
5	공단동 공영주차장	149	5	3		공단동 297-7	신설
6	도량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	18	1	0		도량동 874	신설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1) 2024. 7.: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
- 2) 2024. 8.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
- 3) 2024. 9.: 사업 착수
- 4) 2024. 12.: 사업 완료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「국유재산법」
-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
-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구평동 433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총 6개소의 공유재산(공영주차장) 내 영구시설물(전기차 충전기) 축조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동의를 통한 총 36대의 충전시설(급속 15, 완속 21)의 추가 확보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 계획 및 민간운영사업자(운영주체)의 관리·감독 방안 마련 등 영구시설물의 중·장기적인 관리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